

8월2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비고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0P002237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477	7,957	1,180.54	1,180.54	14.8365	14.84	운동시설	1/	자연녹지지역	20.08.13		조건부동의	B동은 건축물 배치를 로테이트 하여 짧은 면이 도로에 면하도록 계획 바랍니다. B동 도로에 면한 입면길이는 20M 이하로 계획 바랍니다.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2	20206500000P002227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52-14	635	124.52	407.88	19.6	39.22	제2종근린생활시설	2/1	자연녹지지역	20.08.13		조건부동의	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최고높이 10M 이하로 계획 합니다.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3	20206500000P002211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52-51	850	168.9	316.26	19.87	37.2	제1종근린생활시설	2/0	자연녹지지역	20.08.13	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4	20206500000P002070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14-8	4,167	482.22	891.98	11.57	21.41	단독주택	2/	생산물리지역	20.08.13		부결	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곳자왈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